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548호
2. 발 의 자 : 우형찬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등에서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 특기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선택 교과 확대와 고교학점제에 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 책무,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5조).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5.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3월 31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548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시행하는 특수학교에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 특기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¹⁾ 선택 교과와 다양화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입니다.
- 동 제도는 디지털 대전환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다양해지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진로·학업 설계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졸업요건 강화, 학교 공간 및 문화 혁신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안에서 출석 일수만으로 학년 이수가 가능했던 과거의 학사 운영방식과 달리 학생 개인별 수업시간표에 기반하여 과목별로 최소 학력 수준임을 입증해야

1)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https://seoulhsc.sen.go.kr/fus/M1000000000000000061/html/cont0010v.do> (검색일 2025-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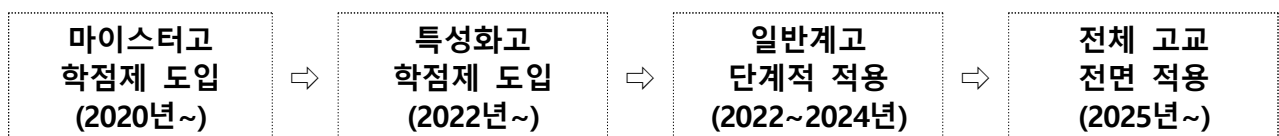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1]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의 변화²⁾

구분	과거의 학교 운영	고교학점제에서의 변화
교육과정	- 교사 중심 획일적 교육과정 - 대학 진학 중심(일반계고) - 학급별 시간표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 진학, 취업, 예체능 등 진로 존중 - 학생 개인별 시간표
학사운영	-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 - 학업 참여 동기 부족	- 출석+학점 취득해야 졸업 - 학업 이행 책무성 부여
교수자원	소속 학교 교사의 수업 수강	- 타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 수강 - 학교 밖 전문가 수업 참여
학습공간	- 소속 학급 중심의 생활 - 일반교실 중심의 획일적 공간	- 선택과목 중심의 이동수업 - 학습, 지원, 공용공간 등 다변화
고교체제	- 고교 다양화가 서열화 초래 - 학교별 분절적 교육과정 운영	- 학교 내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 -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2017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로 구체화되었고,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 특성화고, 2023년 일반계고와 특수목적고 순으로 단계적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2025학년도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³⁾

[그림-1]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⁴⁾



○ 서울시교육청 역시 위와 같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확대 적용 계획에 맞춰 교원연수, 교과교실 확대를 비롯한 환경 구축, 학교 간·학교-지역사회 간 연계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762억 1천

2) 장원주 기자(2021.2.17.), 현 초6, 고1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192학점 채워야 졸업,

<https://dhnews.co.kr/news/view/179522798664453?dt=m> (검색일 2025-04-17)

3) 김기철 등 9명(2024.11.),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5쪽.

4) 교육부 보도자료(2021.8.23.),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1쪽.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과교실 확대, 추진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서울온라인학교 운영, 교육과정·진로·진학의 전문성을 갖춘 CDA(Curriculum Design Advisor)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2] 최근 3년간(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관련 예산 현황⁵⁾

(단위: 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내역
고교학점제도입 운영지원	4,763,040	3,227,310	-	- 연구학교지원 - 고교학점제대국민이해도제고 - 학교간공동교육과정 - 학교환경통합조성사업
고교학점제일반고 운영지원	16,100	8,050	-	- 학교간공동교육과정(공유캠퍼스)
고교학점제인프라 구축지원	2,625,000	550,000	-	- 고교학점제선도지구운영
일반고교육력제고 지원	88,664	60,870	-	- 학교간공동교육과정(거점학교) - 교육지원청준비학교지원
학교내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지원	3,002,607	764,487	-	- 준비학교지원 - 학교환경 통합조성 사업 - 교원연수(CDA, 원격연수 등) -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학교간공동교육과정 운영활성화	1,139,500	1,118,000	-	- 학교간공동교육과정(거점학교, 공유캠퍼스)
고교학점제교육과정 다양화지원	-	-	2,361,140	- 학교간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 온라인학교운영지원 - 선택과목 안내서 개발 및 보급
고교학점제인프라구축	-	-	613,334	- 교과교실제 - 교육지원청고교학점제운영지원 - 지역기관연계특화교육과정 - 온라인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고교학점제교원역량 강화	-	-	157,680	- 교원연수(CDA 등) 운영 -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관련 교원 연수 및 자료 개발 - 고교학점제대국민이해도제고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24,064,000	18,132,000	13,035,000	-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교과교실제운영비지원	129,320	185,220	175,380	-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
합계	11,634,911	5,728,717	16,342,534	

5)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2번 회신 결과를 정리한 것임.

○ 그러나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수업 처리와 교사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고,⁶⁾ 일부 보호자 등이 대학 입시에 대비해 사교육업체의 고교학점제 컨설팅에 몰리고 있는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제도 시행에 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⁷⁾

- 특히, <한국경제> 보도에서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20%, 서울은 6.1%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주와 충남, 대전 등 전국의 학교 현장 곳곳에서 고교학점제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면서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⁹⁾

○ 더욱이 교육활동의 당사자 중 하나인 교원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도 자체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하여 제기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과 지원 대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 9,485명의 56.2%가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상술한 현장의 우려를 뒷받침합니다.¹⁰⁾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등에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6) 이상미 기자(2025.4.2.), '선택권 확대' 취지에도 우려 속출...고교학점제 과제는?, <EBS 뉴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85819/N> (검색일 2025-04-17)

7) 권한울 기자(2025.3.18.),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예요?”...학부모들 혼란에 사교육 컨설팅만 노렸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266250> (검색일 2025-04-17)

8) 이미경 기자(2025.3.5.), [단독] 고교 20%만 학점제 설명회...대치동 컨설팅 업체 찾는 학부모,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042609i> (검색일 2025-04-17)

9) 최지희 기자(2025.4.10.), 고교학점제, 교사는 출결 정정에 허덕...학생은 이수 기준에 혼란, <제주도민일보>,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23> (검색일 2025-04-17)

이일새 기자(2025.4.3.), [시리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달...폐지 여론 높은 이유는 ② - 문제점, <충남일보>,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11> (검색일 2025-04-17)

정인선 기자(2025.3.17.), 교실현장 대변형 고교학점제, 현장은 아우성,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112> (검색일 2025-04-17)

10) 백승진(2025.4.9.),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 고교학점제 정책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19-22쪽.

고교학점제 도입 상황과 현재 제기되는 문제 등을 종합할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와 책무, 적용대상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7조는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각각 교육·연수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기본원칙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고교학점제의 기본원칙을 그 목적성과 주체 간의 역할, 제도 운용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동 조문은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틀 안에서 학생의 창의성과 소질 등을 함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별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고교학점제에서 학생과 학교는 각각 진로·학업 설계의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 고교학점제는 앞서 언급한 사항과 같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운영합니다.
- 아울러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 도입 발표 당시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변화의 양상으로서 ① 학생이 자율적 관리의 대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전환되고, ② 교사는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가 되며, ③ 타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¹¹⁾
-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볼 때 안 제2조의 각호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학교는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교과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특성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 정의와 책무, 적용대상에 관한 검토(안 제3조~제5조)

-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고교학점제’와 ‘학교’, ‘학생’ 그리고 ‘교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 제3조제4호는 ‘교원 등’을 규정함에 있어 교원뿐만 아니라 산학점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부터 제도 안착 방안 중 하나로 ‘교원 자격 및 임용체제 개선’과 ‘교·강사 확보 및 탄력적 배치’를 강조해왔고, 순회 강사나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인력 확보를 구체적 시행

11) 교육부(2017.11.2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5쪽.

방안으로 제시하는 등¹²⁾ 교수자원의 다양화를 추진해왔습니다.

- 안 제3조제4호의 정의는 상기한 배경에서 소속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선생님, 대학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밖 전문가까지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바, 고교학점제의 특성이 고려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4조는 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책무 규정은 교육감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는 것입니다.¹³⁾
 - 이러한 시각에서 해당 조문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계속해서 안 제5조는 고교학점제의 적용대상을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고교학점제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¹⁴⁾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 교육부(2021.2.6.),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8-30쪽 참조.

13)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9쪽.

14)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율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4) 기본계획에 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교원 등의 연수, 학교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의 운영 방향과 주요 성과, 사업별 세부 내용을 담은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림-2] 2025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¹⁵⁾

비전	⇒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고교 교육		
목표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고교학점제 안착		
추진과제	⇒	학점기반 선택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
		• 학생 맞춤형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과목 선택권 확대 • 서울 온라인 학교 운영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 학점 이수 지원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활성화 • 지역기관 연계 교육 과정 운영 확대 • 학점제형 학교 교육 공간 조성	•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성장 지원 역량 강화 •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 •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 따라서 두 조문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수립하고 있는 지원 계획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5)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5.2.),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2025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 3쪽.

5)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에 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5조제1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실태 조사나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같은조제2항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감 승인과목의 신설과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안 제5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된 사업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일선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당 부분 이미 사업 추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안 제5조제2항 각호에 따른 주요 사업 시행 현황¹⁶⁾

구분	주요 사업 내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 공유캠퍼스 19캠퍼스, 54교, 69강좌 운영 ('25년 1학기 기준) -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2~4개 학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택과목 및 진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동교육과정 • 거점학교 9영역, 45개교, 71강좌 운영 ('25년 1학기 기준) - 소인수 희망으로 개별학교에서 개설되지 못한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개설하고, 서울 전역의 학생들에게서 수강 신청을 받아 일과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지원	• 지역 기관과 연계한 진로·진학교육의 기회 확대 및 학생 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사업 및 학교 밖 교육 운영 지속 추진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16개 대학 참여, 171개 프로그램, 123교 - 2025년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활성화 : 성동고-동국대학교(글로벌 시대의 지역문화 이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영상 제작 기초)
교육감 승인 과목의 신설 및 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심의 등 추진 - '24년 하반기 기준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등 중학교급 2과목 고등학교급 7과목의 교육감 승인과목 인정도서 승인 (교육연구정보원) •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지도 원격 직무연수 운영('25년 중) • '25년 중 고등학교 전체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선택과목 안내서 개발·보급 추진

16)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2번 회신 결과; 서울시교육청(2025.4.),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5.2.),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2025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 등을 바탕으로 조문 내용에 맞춰 재구성함.

구분	주요 사업 내용
교과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의 구축 및 운영	- 서울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 운영 (계속) - https://seoulhsc.sen.go.kr/fus/main/view0000v.do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색 사업 운영 지원	2025년 교과특성화학교 21교 운영 : 교당 25,000천원 운영비 지원 - 특정 진로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분야 : 사회(국제), SW, 건축공예, 디자인공예, 제2외국어, 융합

- 그러므로 동 조문은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안 제5조제3항은 다양한 교과 수업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문에서 언급된 온라인학교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덕수고등학교 이전적지에 2025년 3월 1일 개교한 ‘서울온라인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는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하여 2025년 1학기부터 23교가 주문한 48개의 강좌와 다양한 학생이 참여 가능한 13개 개방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¹⁷⁾
- 본 조문은 서울온라인학교의 설립 취지 중 하나가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다양화임을 명확히 하고, 기운영되는 온라인학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2번 회신 결과

[표-4] 서울온라인학교 설립 개요(2024년 기준)¹⁸⁾

구 분	내 용
학 교 명	• (가칭)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기본방향	• 고교 재학생, 건강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운영
개교시기	• 2025. 3. 1.
학교유형	• 공립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학 급 수	• 8학급(45개 강좌)
위 치	• 덕수고등학교 분교(특성화계열) 이전적지(성동구 행당동 70-28)
건 물	• 7,053.84㎡ (본관동 1층~4층 리모델링, 증축 없음)

6) 교육·연수 등에 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은 교육감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등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는 그 특성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원 등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특히, 고교학점제 하에서 교원 등은 학생이 진로·학업계획과 연계한 시간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과와 과목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학습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시행은 그동안 출석일수로 졸업 기준이 충족되고, 교육과정이 학급 단위로 획일화하게 이루어졌던 전통적 학교 운영방식을 변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18)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4.1.12.), 서울 통합온라인학교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한다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운영 시 교육활동 참여자의 역량 증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교원 CDA 전문가 양성,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과 교원·업무담당자 등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5] 최근 3년간(2023~2025년) 교원 연수 현황¹⁹⁾

연도	연수 추진 현황
2023	- 교원 CDA(교육과정·진로학업 설계 전문가)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23.1월, 7월, 371명)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관리자 연수('23.3월, 13명)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핵심교원 연수('23.4월, 14명) -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지도 역량 강화 과정 연수(교원대, '23.8월, 156명) -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수강신청 프로그램 활용 연수('23.8월, 59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현장지원단 워크숍('23.8월) - 선택과목 교원역량 강화 원격 직무연수 과정 운영(연중, 7과목)
2024	- 교원 CDA(교육과정·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24.1,7월, 226명) -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수강신청 프로그램 활용 연수('24.6월, 10월, 136명) -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일반고 교감 및 교무부장 연수('24.7월, 399명) -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도전하기 연수('24.4월, 1,300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강사요원 연수('24.8~9월, 6교과, 76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교과별(6교과) 단위학교 교사 연수(지원청별, '24.9~10월, 1,720명)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안내 연수('24.10월, 200명) - 고교학점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2022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운영하기」('25.2월, 5차시) - 고교학점제 및 선택과목 지도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 운영(연중, 10종)
2025 (3.31. 기준)	- 교원 CDA 역량강화 직무연수('25.1월, 총108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핵심교원 연수 ('25.1월, 6과목 37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교과별 연수('25.2월, 음·미·체·기·가·정보, 총 6과목 645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청 강사요원 워크숍('25.2월)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25.2월, 총250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업무 담당자 나이스 신설 기능 연수('25.3월, 총400명) - 고교학점제 및 선택과목 지도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 운영(연중, 10종)

- 따라서 동 조문은 기시행되고 있는 교원 등의 연수를 활성화하고, 강사나 산학점임교사 등에까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육이나 연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19)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2번 회신 결과.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8조제2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학교장이 개최하는 설명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궁극적으로 동 조문에 근거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학업계획을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학부모 역시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7)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 말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관내 학생의 진로·진학 관련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대학,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과 총 4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²⁰⁾
- 따라서 안 제9조는 기운영 중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²¹⁾

20)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2번 회신 결과를 정리한 것임.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1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